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76,488,711	14,294,661
일반회계	397,050,591	11,911,518
특별회계	79,438,120	2,383,144
공기업특별회계	28,368,257	851,048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28,368,257	851,048
기타특별회계	51,069,863	1,532,096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24,081,775	722,453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3,423,529	402,706
농공지구조성사업	1,819,562	54,587
의료급여기금운영	1,594,044	47,821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069,968	32,099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8,853,323	265,60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27,662	6,8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999,000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4,484,22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